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1999. 9. 1 개정 2015. 6. 1
개정 2010. 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스텍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교수(시간강사, 외국인교수 및 외국인 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포함), 연구원이 포함되며, 피신고자나 피해자 중 한 측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의 실시,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등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상담실) ① 대학은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상담센터 내에 설치, 운영한다.

② 상담실에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상담실에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④ 실장은 상담센터의 상담실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⑤ 실장은 상담센터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상담실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와 접수 및 상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의 조사
4.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6.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정책 수립
8. 기타 위 각 항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①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한 성별에 해당하는 인원이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상담센터장이 되며,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행정처장, 남자기숙사 사감, 여자 기숙사 사감, 학생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5.6.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사건 당사자의 신분예 따라 추가로 관련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1.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수
2. 팀장이상의 본교 전임 직원
3. 기타 사건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 피해자 및 피신고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대책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피해자, 피신고자로부터 특정 위원(위원장 포함)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조사, 중재
2.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발의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

제7조(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실에 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수 대표기구, 직원 대표기구, 학생회, 학내 여성단체 등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

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이송해야 한다.

제8조(사건처리절차) ① 상담센터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담실장은 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사건처리절차와 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신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건의 처리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식적 처리, 비공식적 처리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공식적 처리절차를 원하면 상담센터장은 대책위 위원장과 협의하고, 대책위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책위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6.1)

⑤ 상담센터장 혹은 상담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실장은 대책위 회의 개시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6.1)

⑦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대책위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정당한 보고절차 이외의 다른 경로로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여한 자 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나 사건 내용을 노출시키는 경우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① 대책위 위원장은 대책위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量定)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당사자 신분에 따른 해당 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위 위원장이 피신고자의 자백에 따른 혐의 인정 또는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등 피신고자의 징계사유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에 대한 대책위의 조사 또는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책위 위원장은 당해 사건에 대한 대책위의 조사

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당사자 신분에 따른 해당 위원회로 당해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5.6.1.)

② 상담센터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실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피신고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사건 당사자가 대책위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책위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담실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상담센터장은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